

#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756

제출년월일 : 2015.11.18.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1365호, 시행일 : 2013.02.23)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 나. 적용대상 범위 (안 제6조)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에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 등의 행위

### 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안 제13조)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등

### 라.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14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 마. 녹색건축센터 설치 등 (안 제20조)

-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녹색건축센터 설치

### 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안 제22조)

- 녹색건축물 조성 업무지원 전문가 자문 및 지원 범위 설정

### 사. 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안 제25조)

-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시 건축사회·소재대학·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

**입법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5. 10. 20.(화) ~ 11. 9.(월) 20일간

**제정조례안 : 불임 1**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2**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 2016년 본예산 : 25,000천원(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기타 참고사항 : 불임 3**

- 안산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정 추진계획 방침결정문

## 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 결과

의견 제출자	의견 내용	검토 의견	비 고
감사관	적용대상(에너지 성능개선사업대상)에서 재축은 삭제함이 적정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에서 재축은 삭제하여 반영함. (반영)	안 제6조 제2호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마련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마련 (반영)	안 제17조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실천협의회 (총무 윤성웅)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 마련 (반영)	안 제4조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 근거 마련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 근거 마련 (반영)	안 제5조

## < 불임1 >

#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축 및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 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선"이란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을 의미한다.
6.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
7.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8.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에너지로 공급 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

## 물 확대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 ① 시장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인 설계지침 및 인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는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환경인증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
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

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

## 6. 빗물이용시설 설치

## 7.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준)**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 ① 시장으로부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2개월 이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시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전후사진 1부

2. 공사완료확인서

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11조(정산보고 등)** ①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로 하여금 연 2회 에너지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폐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 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축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과장, 녹지과장, 주택과장 및 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등)
- ② 시장은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산시 녹색건축센터(이하 "녹색건축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
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
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5. 도시공공건축가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시 건축사회·소재대학·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 안 자	소관 실·과	건 축 과
	실·과장 직위·성명 담당·팀장 직위·성명 담당자 성명·전화	건축과장 김 경수 건축행정계장 변 성욱 임정민 (행정 2914)

[별자 제1호서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지원신청내역	대 표 자 사업체(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상지 총 공사비 적용대상 총 공사비 지원 신청액 공사기간	원	건물규모 연면적 (지하 / 지상 )	m <sup>2</sup>	
	원			
	원			
	원			

위와 같이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설계서, 내역서, 사진 포함)
-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이행 각서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 및 동법 제22조에 의한 전문 기업을 말함)

【별지 제2호 서식】

##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상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 $m^2$ )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공사 시공자	대표자	회사명	
	주 소		
	계약금액	원	

위와 같이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대상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 $m^2$ )	
	착수일		완료일	
공사 시공자	대표자		회사명	
	주 소			
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중·개축 <input type="checkbox"/> 대수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 보고서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2015.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유자			
주소			
용도		규모	지상( )/지하( )
대지면적 (m <sup>2</sup> )		연면적 (m <sup>2</sup> )	
허가, 준공연월일			

4.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 연락처 )

5. 사업내용

(단위 : 원)

시설개선 내용	규격(설치면적)	비용	비고
계			

### ○ 시설 개선 상세사항

### ○ 신설, 교체 사진

제 목	장소 및 내용
사업 전	사업 후

### ※ 항목별 각각 전·후 사진 첨부

### ○ 사업정산 내역서

201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원신청내역	대 상 지			
	총 공사비	원	건물규모	연면적 (지하 / 지상 ) $m^2$
	적용대상 총 공사비	원	적용대상	
	지원 신청액	원	총 공사비 대비 지원신청액 비율	%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대 상 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 ( $m^2$ )		
	착수일	완료일			
정산 내용	당초 공사비			실집행액	
	총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계	자체부담
	원	원	원	원	원
반납액(①-②)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2015.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유자			
주소			
용도		규모	지상( )/지하( )
대지면적 ( $m^2$ )		연면적 ( $m^2$ )	
허가, 준공연월일			

4.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5. 에너지 사용량

구 분	단위	사업 전	사업 후	절감량
				(절감율 %)
에너지 사용량	전력	kWh/년		(절감율 %)
	연료 (가스)	$m^3$ /년		(절감율 %)
	기타			(절감율 %)
	계	TOE/년		(절감율 %)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 6. 참고사항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2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에 따라 모니터링 하는 사항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756
------------	------

제안년월일 : 2015년 12월 9일  
제 안 자 : 도시환경위원장

## □ 수정이유

-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및 녹색건축센터 설치 등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관련 규정 삭제
  -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삭제
- 안산시 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삭제
- 녹색건축센터 설치, 위탁관리 및 운영 관련 규정 삭제
  -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삭제

#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 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시 건축사회·소재대학·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

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축 및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i> <li>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li> <li>3.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li> <li>4.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li> <li>5. "수선"이란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을 의미한다.</li> <li>6. "패시브 하우스"란 단열이 매우 잘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을 말한다.</li> <li>7. "액티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passive)인 패시브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active)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i> <li>8. "제로에너지 하우스"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량을 크게 줄이고, 에너지 수요와 재생 에너지로 공급 간에 균형을 이루며 패시브 요소기술 및 액티브 요소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i> </ol>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li> <li>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li> <li>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li> </ol>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3조(기본방향)</b>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li> <li>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li> <li>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li> <li>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li> <li>5.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 확대</li> </ol>	<p><b>제3조(기본원칙)</b>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li> <li>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li> <li>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li> <li>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li> <li>5. <u>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u></li> </ol>
<p><b>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b>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li> <li>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li> <li>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li> <li>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li> <li>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li> <li>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li> <li>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u>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p>	<p><b>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b>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li> <li>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li> <li>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li> <li>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li> <li>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li> <li>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li> <li>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u>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 ① 시장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인 설계지침 및 인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를 추진할 수 있다.</p> <p>②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는 「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환경인증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p>	<p>〈삭제〉</p>
<p>제6조(적용대상)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li> <li>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li> <li>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탄소성적 표지 제품 등)로 사용</li> <li>4.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li> <li>5.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li> <li>6. 빗물이용시설 설치</li> <li>7.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삭제〉</p>
<p>제7조(지원기준)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안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로 한다.</p>	<p>〈삭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8조(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지원</u>  <u>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녹색</u>  <u>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u>  <u>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u>  <u>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u>  <u>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안산시 녹색</u>  <u>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u>  <u>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u>  <u>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u></p>	<p><u>&lt;삭제&gt;</u></p>
<p><u>제9조(사업착수 및 완료신고) ① 시장으로부</u>  <u>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u>  <u>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u>  <u>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u>  <u>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u>  <u>2개월 이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u>  <u>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u>  <u>시기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u>  <u>하여야 한다.</u></p> <p><u>③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u>  <u>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2호</u>  <u>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u>  <u>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u>&lt;삭제&gt;</u></p>
<p><u>제10조(지원시기 등)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u>  <u>후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산시</u>  <u>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u>  <u>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u></p> <p><u>②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u>  <u>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녹색건</u>  <u>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u>  <u>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1. 시공 전후사진 1부</u></p> <p><u>2. 공사완료확인서</u></p> <p><u>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u>  <u>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u>  <u>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지</u>  <u>급한다.</u></p>	<p><u>&lt;삭제&gt;</u></p>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11조(정산보고 등) ① 제10조제1항 단서</u>  <u>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u>  <u>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u>  <u>금 정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u>  <u>출해야 한다.</u></p> <p><u>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u>  <u>납해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u>  <u>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u>  <u>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u>  <u>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삭제〉</p>
<p><u>제12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u>  <u>금을 지원받은 자로 하여금 연 2회 에너지</u>  <u>사용량에 대하여 그 결과(별지 제6호 서식)</u>  <u>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p>	<p>〈삭제〉</p>
<p><u>제13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u>  <u>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u>  <u>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u>  <u>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캐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생태건축물 단지 등)로 조성하는 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p>	<p><u>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u>  <u>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u>  <u>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u>  <u>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p>
<p><u>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u>  <u>조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u>  <u>시기, 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u>  <u>여 안산시녹색건축물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u>  <u>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u>  <u>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축관련 업무담당국</u>  <u>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은</u>  <u>예산과장, 녹지과장, 주택과장 및 건설과장을</u>  <u>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계</u>  <u>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u>  <u>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u>  <u>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삭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15조(위원회의 기능)</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p> <p>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lt;삭제&gt;</u></p>
<p><u>제16조(회의)</u>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u>&lt;삭제&gt;</u></p>
<p><u>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u>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p> <p>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p> <p>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p> <p>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등)</p> <p>② 시장은 위원 중 해당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p> <p>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p>	<p><u>&lt;삭제&gt;</u></p>



제정안	수정안
<p><u>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u>  <u>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u>  <u>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u>  <u>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u>  <u>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u>  <u>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u>  <u>하다.</u></p>	<p><u>&lt;삭제&gt;</u></p>
<p><u>제19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6조 (제정안 제19조와 같음)</u></p>
<p><u>제20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산시 녹색건축센터(이하 "녹색건축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u></p> <p><u>②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u></li> <li><u>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u></li> <li><u>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u></li> <li><u>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li> <li><u>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u></li> <li><u>6.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u></li> <li><u>7.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u>&lt;삭제&gt;</u></p>



제 정 안	수 정 안
<p><b>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b> ① 시장은 녹색건축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삭제&gt;</b></p>
<p><b>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b> 시장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이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li> <li>2.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li> <li>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i> <li>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li> <li>5. 도시공공건축가</li> </ol>	<p><b>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b>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b>제23조(지도·감독)</b>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삭제&gt;</b></p>



제정안	수정안
<p><u>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u>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p> <p>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p> <p>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p>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u>&lt;삭제&gt;</u></p>
<p><u>제25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u>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시 건축사회·소재대학·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u>제8조(제정안 제25조와 같음)</u></p>
<p><u>제26조(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u>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u>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u>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li> <li>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li> <li>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u>제27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0조(제정안 제27조와 같음)</u></p>

